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족 성폭력 범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47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V .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명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Ⅲ. 검토의견

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의의 및 미성년자에 대한 특칙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판례¹⁾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판시하였음.²⁾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되고, 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함.³⁾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제766조제3항).⁴⁾⁵⁾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2) 학설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 ①법적 안정성의 확보, ② 증명곤란의 구제, ③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들고 있음(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4. pp.209)

3)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또한,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제766조제1항)는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 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기산⁶⁾하고,

②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던 점, 가해자와 피보호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관념적 손해가 현실화되었고, 그 시점부터 채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⁷⁾

4)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② (생략)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현행 「민법」 제179조는 미성년자 등의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1. (생략)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여 표현하고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시점, 관련 형사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다투는지 여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심급별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원고를 추행하고 간음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성폭력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위 형사재판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성년에 도달한 2013년 (월일 생략)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제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피해자의 판단능력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2. (생략)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현행법상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766條(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 ③ (생략) <u><신설></u>	第766條(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이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u>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는 피해 노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시점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구체화되는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음. 특히,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그 외의 사례보다 피해구제가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⁸⁾ 이와 같이 피해구제가 구조적으로 지연될

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필요가 있다.

8)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9년 중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한 건수(87건) 중 상담소에 상담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이 21건(24.1%), 10년 이상이 48건(55.2%)으로 나타났다(「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물론 그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친족에 의한 성적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화¹⁰⁾되고 있는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¹¹⁾한 바 있음.

9) 미국은 기존 「형법」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규정하지 않은 반면, 제2255조에 기하여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 또는 범죄가 확인된 날부터 10년으로 한정하였으나, 2022년 9월 16일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공법 제117-176호) 제정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였음(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한편, 독일에서는 개정 독일민법(2022년)에서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효를 30년으로(제197조제1항),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피해가 가정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공동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개정 독일민법 제208조).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고, ②. 만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의안번호 2214190, 2025. 12. 2. 의결

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존재하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소멸시효의 정지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효를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첫째, 현행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중 성폭력 범죄에 한정하여 소멸시효의 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례를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칙과 함께 규정할 것인지, 「민법」 상 소멸시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특례로써 별도의 특별법¹³⁾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특례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이재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2, p.90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요청에 부합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효제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개정안은 소멸시효 배제 대상을 “친족에 의한 성적침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¹⁴⁾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함. 이는 혈연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관계(법정혈족)인 혈족과 혼인을 통해 발생하는 신분관계인 인척을 포함하여 일정한 법률적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법률적 관계로 제한할 경우, 혈족과 인척 외에 부모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의 친족 등이 가해자인 경우¹⁵⁾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친족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셋째,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정하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

14)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

15)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 분석(2025. 4. 30.)에서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사람인 경우가 2,987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척이 293건(6.3%)으로 나타났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는지에 관한 측면임. 개정안은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하여 시효를 배제하는 특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 「민법」 제766조상 불법행위는 계약상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살인죄¹⁷⁾와 같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등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그러므로 개정안의 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하거나 중한 범죄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범죄 간에도 불법성의 차이가 존재하는바 성폭력범죄를 포괄하여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⁸⁾

참고로, 현재 특정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으나,

17)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박찬길,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5집 제3호, 2018, pp21

모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연장이 아니라 특정한 범죄, 즉 성폭력범죄에 국한하여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불법성이 중한 다수의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성폭력범죄라고 할지라도 불법성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은 이미 현행법상 범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를 염두에 두고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형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과거에도 그 고소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던 선례가 있었던 점 등을 논거로 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기간에 대하여 유독 성폭력범죄에 국한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제166조제1항)과 객관적 소멸시효(제766조제2항)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례가 있음.¹⁹⁾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개정안에서 신설한 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소멸시효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 등²⁰⁾으로, 특정 사안에서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효의 진행정지 또는 기간연장 등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²¹⁾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4

- 20)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한 민법 등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 보호’에 있다. 이와 같은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특히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정할 필요성도 있다. (중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 21) 독일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21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고, 채권자가 시효의 기산시에 채무자와 가정적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는 그 공동생활의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의 경우, 원손해 또는 확대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